

속초 조양 대광로제비앙 공공건설임대주택(5년)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안내

- 청약은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반드시 가입은행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자격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의할 것을 권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하여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 신청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신청서비스 안내

-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 청약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단, 노약자 등 인터넷 사용 불가자에 한하여 방문 접수 가능, 신혼부부, 3자녀, 기타 특별공급은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인터넷 청약 불가)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1,2순위에 한함)
이용방법 및 절차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인터넷청약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 속초시 도시디자인과 - 12223호(2009.05.20)로 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1. 공급내역

- 위 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72번지 외 16필지
- 공급규모 : 5년 공공건설임대주택 6개동 36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2.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임대주택 불법 임차권양도전대 금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19조 및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임대대상

구 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주택형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지분	임대 호수				해당동	해당동 형별 최고 층수
				세대별공급면적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포함)	계		공급 세대수	특별		일반		
				전용	주거공용	소계					3자녀	신혼부부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2009000275 (01)	36125-01	084.8530A	84.8533	24.3006	109.1539	35.0286 (32.9918)	144.1825	43.6988	168	5	50	113	101 102 103	15층 15층 15층
	2009000275 (02)	36125-02	084.8530B	84.8533	26.3947	111.2480	35.0286 (32.9918)	146.2766	43.6988	128	4	39	85	104 105 106	17층 16층 17층

2009000275 (03)	36125-03	084.9742	84.9742	28.4636	113.4378	35.0496 (33.0116)	148.4874	43.7610	16	1	5	10	104	17층
2009000275 (04)	36125-04	084.8530C	84.8533	28.8244	113.6777	35.0286 (32.9918)	148.7063	43.6988	17	1	5	11	104	17층
2009000275 (05)	36125-05	084.8530D	84.8533	28.5430	113.3963	35.0286 (32.9918)	148.4249	43.6988	16	1	5	10	106	17층
2009000275 (06)	36125-06	084.9739	84.9739	28.5303	113.5042	35.0496 (33.0116)	148.5538	43.7609	17	1	5	11	106	17층
합계									362	13	109	240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 현관 등의 면적이며, 기타공용은 관리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임.
- 각 신청형별로 배정물량이 있는 유형에 대하여만 신청가능하고 배정물량이 없는 유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을 하더라도 무효처리 됨.
- 주택의 규모 표시방법은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m²)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 구분란 등에 표시된 주택형등은 전용면적 형별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으로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벽식·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이 주택의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각 세대에 직접 연결되는 구조임.(이른바 지하주차장 주동통합형)

■ 임대조건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 번호	층별	임 대 보 증 금					월임대료	입주예정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1차 (09년7월22일)	중도금2차 (09년9월22일)	잔금 (입주시)			
084.8530A	2009000275(01)	36125-01	전층	표준	54,766	10,000	10,000	10,000	24,766	575	2009년 12월 예정
				전환	80,000	10,000	10,000	10,000	50,000	518	
				전환	87,500	10,000	10,000	10,000	57,500	501	
084.8530B	2009000275(02)	36125-02	전층	표준	55,833	10,000	10,000	10,000	25,833	581	
				전환	80,000	10,000	10,000	10,000	50,000	527	
				전환	89,000	10,000	10,000	10,000	59,000	507	
084.9742	2009000275(03)	36125-03	전층	표준	56,983	10,000	10,000	10,000	26,983	588	
				전환	80,000	10,000	10,000	10,000	50,000	536	
				전환	90,000	10,000	10,000	10,000	60,000	514	
084.8530C	2009000275(04)	36125-04	전층	표준	57,071	10,000	10,000	10,000	27,071	588	
				전환	80,000	10,000	10,000	10,000	50,000	537	
				전환	90,000	10,000	10,000	10,000	60,000	514	
084.8530D	2009000275(05)	36125-05	전층	표준	56,928	10,000	10,000	10,000	26,928	588	
				전환	80,000	10,000	10,000	10,000	50,000	536	
				전환	90,000	10,000	10,000	10,000	60,000	513	
084.9739	2009000275(06)	36125-06	전층	표준	57,017	10,000	10,000	10,000	27,017	588	
				전환	80,000	10,000	10,000	10,000	50,000	536	
				전환	90,000	10,000	10,000	10,000	60,000	514	

- 임대기간은 5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 되는 주택임.
- 상기 임대조건은 동·항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매년 물가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결정됨.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을 부과함. (단, 입주시 한번만 납부하고 퇴거시 되돌려드립니다)

4.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 전환 시기** :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선정 함.
- **분양전환가격** :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 당시 **건설원가와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되**,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 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이하 가격으로 결정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 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세대당 5,300만원)을 지원하는 주택으로, 융자지원 된 국민주택기금이 분양전환 계약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상환조건 이율은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름.

5. 입주자모집공고당시의 주택가격

※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임

속초 조양 대광로제비양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 (단, 임대주택의 건축비 및 택지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당시에 산정한 해당주택의 가격에서 임대기간중의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을 초과할수 없음)으로 산정함.

[단위 : 원]

신청형별	계	택지비	건축비
084.8530A	162,533,679	18,771,077	143,762,602
084.8530B	164,667,400	18,771,077	145,896,322
084.9742	166,966,626	18,797,823	148,168,803
084.8530C	167,143,069	18,771,077	148,371,992
084.8530D	166,856,345	18,771,077	148,085,268
084.9739	167,034,115	18,797,756	148,236,359

6. 신청자격, 입주자 선정방법 및 선정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함)

가. 신청자격

아래에서 '무주택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 당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년 5월 21일) 현재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 5. 21일) 현재
- 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재혼포함) 5년 이내이며
 -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납부한 자**
 -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인자.(4인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단, 배우자(세대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소득이 있는 경우(6개월이상 근로에 종사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함)에는 120% 이하 인자.
 ※ '08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09년 통계청)
 > 100% : 월평균소득 3,894,709원(단, 4인:4,276,642원, 5인:4,384,491원, 6인이상:5,188,104원)
 > 120% : 월평균소득 4,673,650원(단, 4인:5,131,970원, 5인:5,261,389원, 6인이상:6,225,724원)
 ※ 자격요건 중 재혼한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3자녀 특별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 5. 21) 만 20세미만('89. 5. 21 이후 출생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

■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 5. 21) 현재 속초시와 그 인근지역에 거주하며, 청약저축 및 예금, 부금에 가입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

중복청약 및 당첨시 처리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당첨여부 미확정으로 일반공급주택에도 청약가능하나 중복 당첨 시 신혼부부 및 3자녀 특별공급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 처리함.

• **일반공급의 경우**

1세대 1건만 청약가능하며 1인 중복청약 또는 부부 각각 청약 등 중복청약 및 당첨 시 모두 계약불가 및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나. 입주자 선정순위

■ **신혼부부 특별공급**

- 1순위 : 혼인기간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순위 : 혼인기간 3년 초과 5년 이내 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3순위 :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자

동일순위 경쟁시 당첨자 결정순차

- 1)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재혼한 경우 자녀수 산정시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도 포함하여 산정

■ **3자녀 특별공급(아래 배점표에 의함)**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 준	점수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 자녀	4자녀 이상	40	미성년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영유아	2명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 (2)	10	3세대 이상	10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 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 기 간 (3)	20	세대주 나이가 만40세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세대주 나이가 만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세대주가 당해 시·도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사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 등본이나 주민등록 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일반공급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 05, 21) 현재 속초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로서,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하여 세대원 전원이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인 자 (단, 2007년 12월31일 이전에 중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 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 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

※ 무순위 신청자는 거주지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만 20세이상인자로 1세대1주택만 신청 가능)

구분	거주구분	순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신청자격	
민간 건설 중형 국민 주택	속초시	1순위	신청 관련	가점제 - 주택소유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중 만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 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접수됨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 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85㎡이하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85㎡이하) 예치금액이상인 분 - '80.8.29이전 국민은행(구.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제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참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1순위자로서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이 불가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2002.9.5 가입자 포함)	
			2순위	가점제	- 2순위 청약자 전원
		추첨제		- 해당사항 없음(별도 추첨제 신청자격 없음)	
		85㎡이하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85㎡이하)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 1순위자중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시는 분	
			3순위	85㎡이하	- 상기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 청약가점제 자격신청은 1,2순위에만 해당되며, 가점제신청자 중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만 해당]
- ※ 허위 또는 착오로 부적격자가 신청하여 당첨될 시에는 계약 및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함

● 거주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4항 관련)

(단위: 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기타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시·군지역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300	250	200

· 과거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선택 → 과거 5년간 당첨사실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 (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신청이 불가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1,2순위 공급물량의 전용면적 85㎡이하 75%를 우선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함

- 가점제의 공급기준

구분	면적기준	공급기준
청약가점제	전용면적 85M2이하	· 가점점수(산정기준표 참고)가 높은 순으로 75%를 우선 공급함 [나머지 25%는 추첨제(일반공급)를 적용함]
	공통사항	· 각 주택형별로 신청 가능한 청약저축 청약예금(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순위를 취득한 자 · 가점제 신청분 중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르며 가점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를 적용하는 주택의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가점제의 적용기준

구분	신청자격
무주택기간 인정적용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③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2)에 따른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 이하의 주택으로써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p>3)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 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p>4) 1)부터 3)까지에 따른 무주택기간의 적용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부양가족의 인정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p>3)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p>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적용 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p>

● 가점제 적용 세부기준

일반기준	<p>· 가점제 점수는 아래의“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아래의“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한다.</p> <p>· “감점 산정기준”에 따른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가점점수 산정기준표”에 따른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한다.</p>
------	---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확인할 서류)

가 점 항 목	가 점 상 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주민등록등본 -건물 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가족관계증명서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계	84					
비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③항, 제12조 제③항, 제⑤항, 제⑦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감점점수(아래의"감점 산정기준"참고)						

● 감점 산정기준

구분	기준	감점항목	
		소유주택수	감점점수
①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③항 제6호에 따른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소유하는 주택이 2호 또는 2세대 이상인 경우	2호 또는 2세대	-5
		3호 또는 3세대	-10
②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 2 제①항 제2호 또는 제12조 제①항 제2호에 따라 제2순위로 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2호 또는 2세대	-10
		3호 또는 3세대	-15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입주자 저축의 통장은 동일한 통장으로 다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자 또는 기당첨자가 된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 기간이 경과 후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본 주택에 당첨될 경우(부적격 당첨자 포함) 계약체결여부에 상관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해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 상기 기재사항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공급계약이 해제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인정기간 산정에 관한 유의사항
 - 세대주 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 후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이를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주 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다. 입주자 선정방법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건설량의 3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 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우선순위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일반공급

- **청약가점제 적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 2에 의거 1,2순위 공급물량의 전용면적 85㎡이하 75%를 우선 공급함
- 가점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 함.

7. 공급일정 및 장소

■ 특별 및 일반공급 신청접수

구분	순위	거주지	접수일자	접수장소 및 시간	당첨자 발표
민간 건설 국민 주택	특별공급	속초시	2009.05.26(화)	- 장소 : 현장 샘플하우스 - 시간 : 10:00~14:00	- 일시 : 2009.05.26(화) 17:00 - 장소 : 현장 분양사무소
	1순위		2009.05.27(수)	- 청약관련예금 가입은행 인터넷청약 * 국민은행(www.kbstar.com)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시간 : 08:00 ~ 17:30	- 일시 : 2009.06.04(수) - 장소 : 현장 분양사무소
	2순위		2009.05.28(목)		
	3순위		2009.05.29(금)	- 우리은행 본.지점 - 시간 : 09:00 ~ 16:00	※ 당첨자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은 신청형별에 따라 신청접수 후 당첨자를 선정함.
-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일자별로 신청접수하며 신청자가 각 신청유형별 배정세대수에 달한 경우 익일 접수치 않음.
단, 신청접수가 마감되지 않은 신청형별에 대하여는 상위점수 해당자가 하위점수 해당자 신청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첨자 결정시 신청접수일에 따른 차별은 없음.
- 일반공급은 순위별로 구분하여 신청접수하며 각 신청형별로 당해 접수일까지의 접수자가 배정호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익일 접수치 않으며, 선순위자는 미달시에도 후순위 접수일에 접수할 수 없음.(예시 : 3순위 접수일에 1,2순위 자격으로 접수 불가. 3순위 자격으로는 접수가능) 단, 3순위 접수종료 시 모집세대수에 달한 모집단위는 120%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무순위 접수하지 않음.
- 세대주기간은 주민등록등·초본을 기준으로, 청약저축 납입인정횟수 및 납입인정금액은 국민주택공급신청서(가입 은행에서 발급)를 기준으로 각각 확인함.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 없이 일괄 추첨함.
- 3순위 신청자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또는 1,2순위 신청자 중 같은 순차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신청형별로 공급호수의 2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예비입주자로 통보를 받은 후 당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는 당첨자로 관리되며, 최초로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하여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자도 당첨자로 봄.
-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신청형별에 따라 입주 시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가 소멸됨.
- 특별공급 물량에 대하여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특별공급 부적격처리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함.

■ 당첨자 발표 및 장소

- **발표일시 : '09. 6. 04(목) 17:00 이후**
- 발표장소 : 당사 홈페이지 및 속초 조양 대광로제비항 현장 분양사무소
- ※ 당첨자 명단은 개별통보치 않으므로 신청장소 및 당사 홈페이지(www.clickdk.com)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방지를 위해 당첨문의 전화는 응답하지 않음.

■ 인터넷, KB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제공하는 부가서비스이므로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舊주택은행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기간		09. 06.04~ 2009. 6.13(10일간)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 접속 ⇒ 당첨자사실조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청약 ⇒ 당첨확인
	전화 ARS	☎ 1369(서비스코드 : 5#)	☎ 1588-9999 (서비스코드 :70)

■ 계약일시 및 장소

- 계약 일시 : '09. 6. 11(목) ~ 6. 13(토) (3일간) 10:00~16:00
- 계약 장소 : 속초 조양 대광로제비양 현장 분양사무소
- 계약금 납부 : 아래 지정 계좌로 무통장 입금(현장 수납은 불가)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및 임대보증금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1-230385	(주)대광이앤씨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1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이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8.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 5. 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포함을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서약서 및 임대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당해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입양인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청약통장가입확인서 1통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무주택서약서 (당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 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소득입증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징구)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직장의료 보험 가입자	일반근로자	* 2008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원본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2009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해당직장

		* 재직증명서(직인날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학원강사,보육교사 등)	*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직인날인된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해당직장
자 영 업 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2008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 제출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2008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상거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당사소정양식)	* 접수장소

■ 3자녀 특별공급

- 특별공급신청서, 특별공급서약서 및 임대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세대주 성명 및 관계”표기 및 “주소변동이력” 모두 기재된 것)
 -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상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 '07.12.31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장애인등록증 사본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 '07.12.31 이전에 장애인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호주승계예정자로서 세대주로 인정받아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
- 무주택서약서 (당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제출함)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도장(본인신청시 서명 가능)

■ 청약 신청시 구비사항(창구 청약자에 한함)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해 확인(검증)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을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세대주기간, 주택 소유여부 등)을 신청 전에 정확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청약자 본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므로 청약자격 착오 기재 등으로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계약체결이 불가하거나, 계약이 취소될 경우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자는 해당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을 통하여 청약신청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 신청서(1.2순위: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3순위(국민은행 본·지점 비 치)	제3자 대리신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본인 신 청시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또는 서명 -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등록증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구비(동일세대 구성 시: 주민등록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시: 가족관계확인서 1통) - 청약 신청금 및 환불계좌 사본(청약자 명의 통장에 한함)(3순위 신청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 비치)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	--	---

* 상기 제 증명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수록 신청일 3개월 이내에 발행분에 한함.

■ 3순위 청약 신청금

구 분	주택형별	금 액	신 청 금 납 부 방 법
청약 신청금	전 주택형	100만원	창구청약자께서는 가능한 속초시 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 신청금 환불

- **환불신청: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2009.06.04)이후 평일 09:30 ~ 16:00 (단,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환불장소: 우리은행 본·지점
- 환불대상: 3순위 청약자(당첨자포함)
- 구비서류: ①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② 주민등록증 ③ 청약 시 사용인장 또는 본인, 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자가 환불 시에 한함)
- 3자 대리환불시 추가 구비사항
 - ①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이외에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청약 신청금 환불위임용)1통 (단,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②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생략) ③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④ 위임장
- 3순위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시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 접수한 우리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본인의 우리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 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신청시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시 무주택서류는 제출치 않으며,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한 무주택서약서를 제출하고, 당첨자중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무주택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고, 당첨자 판정기준은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 및 계약 후라도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서류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가접수 등 일체의 접수가 불가함.

9. 계약시 구비서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09. 5. 21) 이후 발급분에 한함]

■ 방문신청자

- 인감증명서 1통(신청자본인이 직접 계약시 주민등록등본 양면사본 또는 여권 양면사본으로 대체가능)
- 계약금(입금확인증) · 인감도장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불법전매전대금지각서 및 무주택각서(당사소정양식으로 계약장소에서 배부)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하여야 함.
- 위임장 1통 · 당첨자의 인감증명서 1통
 - 당첨자의 인감도장 · 대리계약자의 주민등록증

10.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축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판정기준 : 검색대상자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5년, 3년, 모집공고일 현재)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주택의 취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 조항을 참조)
 - 1) 상속으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 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 다른 주택 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이하인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4) 개인사업자가 소속근로자 숙소용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정부시책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5) 20㎡이하인 주택(아파트는 제외)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 6) 60세이상인 직계존속의 소유주택
 - 7) 공부상에는 주택이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주택
 -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1. 입주 관련 사항

- **입주자 사전점검** :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개시 전에 사업주체의 통보일정에 따라 실시함.
- **입주예정일** : 2009년 12월 경

12.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 됨.

13. 유의사항

- 당사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1세대에 1건의 청약신청만 가능하며, 이종으로 신청(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주 또는 그 세대의 배우자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포함)시 신청 건수 전체를 무효 처리함.
- 특별공급 및 1~3순위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되고, 1~2순위 당첨자는 계약체결여부와 관계없이 청약관련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이 불가한 자 포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유주택등 부적격자로 판명·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아래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당첨자는 계약 및 청약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함.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임대차기간만료시(분양전환)까지 세대주를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전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당사에 명도하여야 하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함.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잔금연체료가 부과됨.
- 예비당첨자가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음.
-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신청 및 계약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는 당사와 전혀 무관한 사항임.
- 마감재 내역은 형별, 타입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건본주택 및 분양팜플렛 등 각종 홍보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주택의 배치구조 및 등,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세대평면등 구조적 차이가 있으니 건본주택 및 단위세대 평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발코니 확장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는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단위세대 평면내용 중 추후 공사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수 설비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일부 벽체의 위치 및 시설물의 설치내용이 추가 또는 조정될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내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36호)에 따라 보상 가능함.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당사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임대주택법령」에 의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 난간 높이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위치 및 형태는 실제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부지의 신축건물로 인하여 조망권 침해 및 일조량이 감소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105동에는 1층에 공공통행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하여 필로티가 설치 됨.

14.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주요내용

주택임대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채권자
제01292009-102-0000200호	10,860,000,000원	임차인모집공고승인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포함)까지	입주예정자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및 주요내용

1.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2.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 입주금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를 변경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대출받은임대보증금대출금의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웁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15. 시행사 : 주식회사 대광이앤씨(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경기-주택2002-0145)

16. 시공사 : 주식회사 대광건영(주택건설사업자등록번호 : 광주광역시-토목건축공사업-2196)

17.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구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주)토인이앤씨건축사사무소	658,734,000	부가가치세 포함
전기	기술사사무소 경민엔지니어링	50,000,000	
통신	기술사사무소 경민엔지니어링	15,000,000	
소방	기술사사무소 경민엔지니어링	5,000,000	

18. 분양사무소 위치 안내 (방문신청 및 계약장소 약도)

- 주 소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72번지 대광로제비양 현장
- 대중교통 : 시내버스 1번, 7번, 9번 조양동사무소에서 하차하여 조양주공1단지 방면으로 도보 5분



문의전화

- 속초 조양 대광로제비양 분양사무소 ☎033-633-9500
- (주)대광건영 속초 현장 ☎033-636-8430
- (주)대광이앤씨 ☎02-2057-8431

※ 전화안내는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입니다.

※ 본 입주자 모집안내는 편집 및 인쇄 과정 중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문의전화 등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